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
일부개정법률안
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8.

발 의 자 : 홍기원 · 차지호 · 문진석
윤후덕 · 전용기 · 이해식
이연희 · 송옥주 · 장철민
이기현 · 박정현 · 최혁진
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·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,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·물리적·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인공지능집적단지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적화에 단순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,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. 이를 통해 인력 양성-연구-개발-사업화의 전 주기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·활용의 경쟁

력 강화를 위해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에 「고등교육법」 상
교육기관을 포함하고자 함(안 제2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

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기관이나 단체”를 “기관, 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
2조에 따른 학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	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
제23조(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 공지능 개발·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 공지능기술의 연구·개발을 수 행하는 기업, <u>기관이나 단체</u> 의 기능적·물리적·지역적 집적 화를 추진할 수 있다.	제23조(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 관, 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 2조에 따른 학교</u> ----- ----- -----.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